

## ●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-091호

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」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0일

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

### 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」 일부개정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「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」(이하 ‘규칙’)에 대해 제기되었던 법제처의 정비의견에 따라 규칙을 수정하고, 기타 명확화 요구사항 및 각종 신청서 상에서 불필요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항목 등에 대한 정비 필요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해야하는 서류 중 공시성 정보(법인등기사항증명서) 삭제(규칙 제7조 제2항)
- 나. 방송분쟁조정 관련 처리기간 산정기준 등 명확화(규칙 제11조 제6항, 제7항, 별지제9호의2 신설)
- 다. 정비대상 용어 수정(규칙 제21조제3항, 별지2, 별지7)
- 라. 별지의 각종 신청서상 불필요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삭제하고, 제목·용어 등 형식 정비(별지2, 별지5, 별지6, 별지7, 별지17, 별지18)

#### 3. 의견제출

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(참조 : 방송정책기획과, 주소 :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(중앙동), 전화 : 02) 2110-1413 팩스 : 02) 2110-0136, 이메일 : hursh@korea.kr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자료

#### 4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(www.kcc.go.kr 정책정보센터/법령정보/입법예고)란에 게시된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(02-2110-141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